

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5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최웅식, 김화숙, 김평남, 고병국,
정진술, 전병주, 김정태, 이태성,
김소영, 김제리, 박순규, 문장길,
홍성룡 의원 (13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산정법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현행 조례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변경함(안 제8조제3항제1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24개월분으로”를 “12개월분 이내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보증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새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임대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대료 등)① ~ ②(생 략)</p> <p>③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경 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 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임대보증금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월임대료의 24 개월분으로 하되, 일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자 또 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 부할 수 있으며,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④ ~ ⑦ (생 략)</p>	<p>제8조(임대료 등)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12 개월분 이내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